

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## 전통지식분과 제2차 회의록

- 회의일시: 2023. 6. 29.(목), 14:00
- 장 소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: 김종대(분과위원장), 배영동, 석대권,  
이순녀, 천혜숙, 혜일(이승우), 황경숙(이상 7명)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#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	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↓	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	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↓	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↓	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	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 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 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 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↓	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↓	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#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## 목 차

### 【심의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	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# 【검토사항】

1	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 종목 선정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 검토	비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심 의 사 항

# 1.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

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경산자인단오제’ 보유자 박인태 등의 명예보유자 인정 건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나. 제안사유

- 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차 회의(‘23.5.4.)에서 ‘경산자인단오제’ 보유자 박인태 등 2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, 관보에 공고(‘23.5.16.~6.15.)하고 명예보유자 인정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
## 다. 주요내용

### 1) 추진경과

- ‘경산자인단오제’ 보유자 박인태 명예보유자 인정신청서 제출(‘23.4.19.)
- ‘영산줄다리기’ 전승교육사 신수식 명예보유자 인정신청서 제출(‘23.2.27.)

#### <참고> 전승교육사 대상 명예보유자 인정 요건

- ▲ (인정요건) 73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
- ▲ (제외대상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  - ①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승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 - ②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승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
  - ③ 성희롱,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) 예고사항(관보 제20502호 / 2023.5.16. / 문화재청 공고 제2023-221호)

- 대상자: 박인태, 신수식
- 예고내용: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

구분	문화재명	성명	기·예능	주소
명예보유자 인정	경산자인단오제	박인태 (朴仁太)	무용	대구광역시 동구
명예보유자 인정	영산줄다리기	신수식 (辛秀植)	줄제작	경남 창녕군

- 예고사유: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박인태와 영산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신수식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,

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

- 예고결과: 접수 의견 없음

#### 라. 검토의견

- 인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심의할 사항: 박인태 · 신수식의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

#### 바. 의결 사항

- 가결(출석 7명, 가결 7명)
  - 박인태 · 신수식의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

검 토 사 항

## 1. 인류무형유산 차기 신청대상 선정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